

대학원 학칙

1999. 1. 28. 제정

2022. 1. 2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두는 대학원 등 15개 대학원(이하 “각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1., 2019.9.11., 2021.9.17.>

제2조(대학원의 종류) 본교에 일반대학원인 대학원, 전문대학원인 국제대학원, 통역번역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각 전문대학원”이라 한다),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 디자인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신학대학원, 정책과학대학원, 공연예술대학원,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이하 “각 특수대학원”이라 하며, 대학원, 각 전문대학원, 각 특수대학원을 합하여 “각 대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11.20., 2016.10.10., 2019.9.11., 2021.9.17.>

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 대학원, 각 전문대학원, 각 특수대학원에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하며,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통합과정을 합하여 “각 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5.3.5., 2015.10.26., 2016.2.16., 2017.5.4., 2017.9.15., 2018.5.8., 2018.9.14., 2018.12.19., 2019.1.10., 2019.9.11., 2020.11.10., 2021.9.17.>

② 삭제 <2016.10.10.>

제4조(학부·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① 대학원, 각 전문대학원,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부·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5., 2015.10.26., 2016.2.16., 2016.10.10., 2017.9.15., 2018.9.14., 2018.12.19., 2019.1.10., 2019.9.11., 2020.1.21., 2020.3.20., 2020.5.6., 2020.11.10., 2021.9.17.>

② 총장은 제1항에 규정된 대학원 총 입학정원 내에서 계열별 입학정원을 조정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각 대학원 각 학위과정에 학과간 협동과정과 학연·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④ 대학원 내 두 개 이상의 학과·학부가 융합전공을 공동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3.20.>

제5조(연구생) 각 대학원 각 과정별로 연구생을 선발하여 연구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입학·편입학·재입학·등록·휴학·복학 및 제적

제6조(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학년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2.23., 2016.10.10.>

제7조(입학자격) ①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②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8조(입학지원절차) 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시행세칙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 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입학전형) ①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입학지원서류심사, 구술시험, 면접 등으로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선발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입학허가) 입학은 총장이 허가한다.

제11조(입학전공분야) 입학지원자가 지원하는 각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전공분야는 하위 학위 과정의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2조(편입학) ① 각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학부·학과별로 각 학위과정 제3학기로의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7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편입학하는 학생은 입학정원 외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3.21., 2017.08.16., 2019.9.11.>

② 교내외의 각 대학원의 각 학부 또는 학과에서 18학점 이상(국제대학원 한국학과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편입학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2.23., 2021.8.20.>

제12조의2 <삭제 2014.1.29.>

제12조의3 <삭제 2014.1.29.>

제12조의4(학위과정 변경) ①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 중 1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예정인 자는 신청에 의하여 통합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31.]

제12조의5(학과·전공변경) ① 입학 후 학과·전공의 변경은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과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과·전공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9.]

제13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총장이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개정 2008.8.19., 2017.08.16.>

② 재입학을 한 학생에게는 자퇴 또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8.19., 2017.08.16.>

제14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학기 초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3주일 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7.08.16.>

② 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한다. 다만, 교과과정상의 필요에 따라 총장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는 이를 1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2.11.>

③ 휴학기간은 모두 합하여 석사학위과정은 2학기(의학전문대학원은 6학기, 법학전문대학원은 4학기, 특수대학원은 3학기), 박사학위과정은 4학기, 통합과정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휴학기간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15.9.18., 2020.3.20.>

1. 본교와 복수학위 수여 협약을 맺은 해외 대학 복수학위 취득 예정인 석사학위과정생 : 2학기
 2.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 : 2학기
 3. 군복무로 인한 휴학 : 해당 의무복무기간
 4. 재난,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학 : 총장이 지정한 학기(단, 대상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5.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중 총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 총장이 승인한 학기(단, 재학연한만료예정일로부터 1학기 전까지에 한하여 연장을 인정한다)
- ④ 휴학기간은 재학연한 및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하 “논문제출연한”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은 휴학기간을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6., 2016.2.26.>

⑤ 삭제 <2020.3.20.>

제16조(복학) 휴학을 한 학생이 복학을 원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제17조(자퇴)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자퇴할 수 있다. <개정 2017.08.16.>

제18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장이 제적한다.

1. 제15조제2항에서 정한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
4. 재학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개정 2015.2.6.>
5.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제3장 수업연한, 교과과정, 학점, 성적 및 수료 <개정 2015.2.6.>

제19조(수업연한·재학연한) ① 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하며,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경영전문대학원(주간) 석사학위과정 및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학기, 경영전문대학원(주말)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학기, 각 특수대학원(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및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은 제외)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5학기, 경영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교육대학원 계절제의 수업연한은 3년, 의학전문대학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개정 2015.2.6., 2020.9.11., 2021.9.15., 2022.1.20.>

②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에서, 학칙 제47조의4에 의한 학·석사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1학기를 단축할 수 있으며 제29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사유로 인한 단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6., 2020.1.21., 2022.1.20.>

③ 각 대학원의 각 과정의 재학연한은 논문제출연한(제29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에 의하여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이 대체 또는 면제된 경우에는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석사학위 취득 요건 구비 연한)과 같다. <개정 2015.2.6., 2019.9.11., 2020.1.21., 2022.1.20.>

제19조의2(학기) 경영전문대학원(주말) 석사학위과정은 매 학년도 4개 학기로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0.9.11.]

제20조(교과과정)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1조(수료인정 및 이수학점) ①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각각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통합과정으로 입학하거나 전환한 학생이 입학 후 2년 이상 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경우 그 학생에 대하여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고, 4년 이상 등록하고 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개정 2015.2.6., 2016.2.16.>

②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다만, 국제대학원 국제학과는 38학점, 한국학과는 33학점, 통역번역대학원은 44학점, 경영전문대학원은 45학점, 의학전문대학원은 181학점, 법학전문대학원은 90학점, 교육대학원은 27학점, 디자인대학원·공연예술대학원·임상치의학대학원·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은 30학점(임상치의학대학원 임상구강보건학과는 26학점), 신학대학원은 33학점,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은 36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3.11.20., 2015.9.18., 2022.1.20.>

③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36학점으로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은 30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6.2.16., 2019.9.11.>

④ 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60학점으로 한다. <신설 2016.2.16.>

제22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각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한 학기에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교육대학원·사회복지대학원·정책과학대학원·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의 학생은 6학점까지(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의 경우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이 있을 때에 호스피스전문과정은 12학점까지, 그 외 전공은 9학점까지), 임상치의학대학원의 학생은 11학점(전공임상실

습 포함)까지, 디자인대학원·신학대학원·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의 학생은 9학점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21학점까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15학점까지, 공연예술대학원 학생은 1년에 15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경영전문대학원의 학생이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별표 4,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이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2.25., 2017.2.8., 2019.1.10., 2019.9.11., 2020.9.11., 2021.9.15., 2022.1.2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대학원의 학생은 재학 중 한 학기에 한하여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교육실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습을 이수하는 학기에 한하여 별도로 4학점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9.2.23.>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원은 학사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재난, 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 대학원생이 최대 3학점까지 학점을 추가 취득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6.4., 개정 2021.3.3.>

④ 각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연구생은 한 학기에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4.12.22., 2020.6.4.>

⑤ 전문대학원의 학생이 총장이 정하는 전문분야 실습과목을 수강할 경우에는 제1항의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4.12.22., 2020.6.4.>

제23조(보충과목 이수)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제21조 규정이 정하는 수료학점 이외에 추가로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부전공)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은 소속 학부 또는 학과 이외의 전공교과목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23.>

②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제21조제2항의 학점 외에 부전공 이수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수료를 인정한다. <신설 2017.8.16.>

③ 부전공의 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학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①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가 각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에 6학점까지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수학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학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각 대학원 교과목의 학점은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에 같음하여 취득하는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23., 2020.1.21.>

② 석사학위과정 또는 통합과정의 학생이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에 6학점까지 당해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경영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23.>

제26조(본교 또는 국내외 다른 학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이 본교 또는 국내외 다른 학교의 대학원에서 입학전이나 재학중에 취득한 학점은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수료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이 입학전이나 재학중에 국내외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수료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

대학원 학칙

으며,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이 입학전이나 재학중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라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6.>

[제목개정 2008.8.19.]

제26조의2(국내외 연수) ① 각 대학원 학생은 재학기간 중 소속 대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 연수를 할 수 있다.

② 국내외 연수는 연수기간 및 연수내용을 고려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당 취득학점 범위 안에서 실습교과목으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6.19.]

제26조의3(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각 대학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본교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의하여 각 대학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3.5.15.>

③ 제2항에 따라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제26조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3.5.15.>

④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5.15.>

[본조신설 2013.5.15.]

제27조(학업성적) ①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은 본교 학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성적사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잠정적으로 I(미완)의 성적을 부여하며, 이 경우 성적사정이 끝난 후에 사정한 성적으로 이를 대체한다.

제28조(유효성적과 수료성적) 학업성적은 강의시간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출석하고 시험성적이 C-이상(법학전문대학원은 D-이상) 또는 S(합격)인 경우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수료사정에 있어서는 총 평균성적이 3.00 이상(의학전문대학원은 2.30 이상, 법학전문대학원은 2.0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5.15., 2018.5.8.>

제4장 학위수여

제29조(학위의 수여 및 종별) ① 각 대학원 각 과정에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구술심사를 포함한 논문심사에 합격한 때에는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학위수여요건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3.5., 2015.10.26., 2016.2.16., 2016.10.10., 2017.2.8., 2017.9.15., 2018.9.14., 2018.12.19., 2019.1.10., 2019.5.17., 2019.9.11., 2020.1.21., 2020.4.13., 2020.5.6., 2020.8.19., 2020.9.11., 2020.11.10., 2021.9.17., 2022.1.20.>

② 대학원에서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 중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이에 준하는 학점을 추가 취득하거나 연구실적을 승인받고 총 평균성적이 3.0 이상인 학생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21., 개정 2020.8.19.>

③ 국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교과목 3학점을 추가 취득하고 총 평균성적이 3.0 이상인 학생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9.26., 2017.2.8., 2019.9.11., 2020.1.21., 2020.11.10.>

④ 통역번역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이 종합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9.2.23., 2020.1.21.>

⑤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이 평균성적 3.0 이상인 때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3.11.20., 2019.9.11., 2020.1.21.>

⑥ 교육대학원, 디자인대학원, 신학대학원 및 정책과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교과목 6학점을 추가 취득하고 총 평균성적이 3.0 이상인 학생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9.11., 2020.1.21., 2020.11.10.>

⑦ 사회복지대학원,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및 임상치의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교과목 6학점을 추가 취득한 학생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9.11., 2020.1.21., 2020.11.10.>

⑧ 공연예술대학원에서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교과목 6학점을 추가 취득하고 총 평균성적이 3.0 이상인 학생 또는 렉처리사이틀을 통과한 학생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9.11., 2020.1.21., 2020.11.10.>

⑨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이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 합격한 때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석사학위청구포트폴리오의 제출에 갈음하여 교과목 3학점을 추가 취득하고 총 평균성적이 3.0 이상인 학생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5.9.18., 2019.9.11., 2020.1.21.>

⑩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데이터사이언스캡스톤프로젝트 교과목 성적이 B0 이상인 학생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신설 2022.1.20.>

⑪ 통합과정을 중도에 자퇴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10.11., 2019.9.11., 2020.1.21., 2022.1.20.>

제30조(명예박사학위) ① 학술발전에 특별히 공헌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학위의 종별은 받는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의 내용을 고려하여 제29조제1항에 정한 박사학위의 종별로 정한다.

제31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대학원 학칙

2.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한 자 <신설 2014.1.29.>
4.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 있는 자

제32조(논문제출연한 등)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학위과정은 7년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11년(법학전문대학원은 8년(휴학기간 제외)) 이내, 통합과정은 13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16.2.26.>

② 제29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에 의하여 대학원, 국제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임상치의학대학원은 제외)의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이 대체 또는 면제된 경우 제1항의 연한 이내에 석사학위 취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1.21., 개정 2020.11.10., 2022.1.20.>

③ 제29조제4항 및 제5항과 같은 조 제7항에 의하여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이 대체 또는 면제된 경우에는 경영전문대학원(주간)의 학생은 과정수료 후 3학기 이내에, 통역번역대학원·경영전문대학원(야간/주말)의 학생은 과정수료 후 4학기 이내에, 임상치의학대학원의 학생은 과정수료 후 5학기 이내에 석사학위 취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입학년도로부터 8년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입학년도로부터 5년(휴학기간 제외) 이내에 석사학위 취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2.6., 2016.2.26., 2017.2.8., 2019.9.11., 2020.1.21., 2020.9.11., 2020.11.10.>

제32조의2(논문제출자격 재부여) 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6.>

②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경우, 논문제출 잔여기한은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 박사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합격시까지 연속으로 논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대학원, 디자인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및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의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받은 학생은 제29조제6항 및 제7항에 의하여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이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2년 이내에 석사학위 취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디자인대학원은 제29조제6항의 대체 학점에 더하여 입학년도별로 최대 6학점 이내에서 학점의 추가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1.21., 개정 2020.11.10., 2022.1.20.>

④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 대한 심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1.>

[본조신설 2008.8.19.]

제33조(논문제출 자격시험) 제31조제2호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4조(통합과정 자격시험) ① 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입학 후 4학기 이내에 통합과정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제2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제35조(학위청구논문 심사) ①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석사학위과정은 3인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개정 2015.10.26.>

②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로 인하여 학위를 수여 받은 경우 또는 제30조에 따라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4.21.>

제5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36조(학생지도) 각 대학원 학생은 이 학칙을 준수하고 소속 대학(원)장, 부학(원)장, 학부장, 학과(또는 협동과정)주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9.26.>

제36조의2(학생자치활동) ① 학생은 대학원학생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15.]

제37조(징계)① 각 대학원의 학생이 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장은 중앙지도위원회 또는 해당 대학원지도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2.5.17.>

② 징계의 종류는 견책,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5.17.>

③ 대학원지도위원회는 각 대학원별로 대학원장, 부원장 및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며, 간사는 부원장이 된다. <개정 2014.9.26.>

제38조(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대학원위원회 및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개정 2014.1.29.>

제39조(대학원위원회의 구성) ① 본교에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위과정·학과(부)·전공의 설치·폐지와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각 대학원 및 대학원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각종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각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40조의2(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각 학과·학부의 대학원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과·학부별로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대학원 학칙

②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학과주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일 전공분야의 위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과·학부의 특성에 따라 대학(원)장과 협의하여 그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9.]

제40조의3(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 시행에 관한 사항
2.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3. 교과목개설 및 교과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
4. 논문지도교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논문심사위원 구성 및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
6. 학위취득 요건에 관한 사항

6의2. 석사학위청구논문에 갈음하는 제도의 시행 여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8.19.>

7. 기타 대학(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1.29.]

제7장 보칙

제41조(준용규정) 학기, 수업일수, 휴업일, 수업료 기타 납입금 등에 관한 사항 및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42조(시행세칙의 제정)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경영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6.16., 2021.9.15.>

부칙(1999. 1. 28 제정)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학원학칙, 국제대학원학칙, 통역대학원학칙, 교육대학원학칙, 디자인대학원학칙, 사회복지대학원학칙, 정보과학대학원학칙, 신학대학원학칙, 정책과학대학원학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구 학칙이 폐지됨에 따라 이 학칙의 시행 당시의 각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

② 사회복지대학원에 199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26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사회복지대학원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1999. 3. 22 개정)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0. 25 개정)

이 학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3. 7 전문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199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2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

2. 이 학칙 시행 당시 대학원 공학계열 컴퓨터학과, 전자공학과, 건축학과 및 환경공학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각각 이 학칙에 의하여 과학기술대학원 설립시부터 과학기술대학원 컴퓨터학과, 정보통신학과, 건축학과 및 환경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이 학칙 시행 당시 정보과학대학원 경영정보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경영대학원 경영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0. 10. 13 개정)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4. 25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정보과학대학원과 정책과학대학원의 학과 및 전공에 관한 사항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당시 대학원 음악학과, 동양학과·서양학과·조소과, 정보디자인과·장식미술과, 섬유예술과·도예과, 체육학과·사회체육과·무용과, 북한연구협동과정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이 학칙에 의거 각각 음악학부, 미술학부, 디자인학부, 공예학부, 체육학부, 북한학협동과정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정보과학대학원 멀티미디어학과, 전자상거래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각각 정보과학과의 멀티미디어학전공, 전자상거래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정책과학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산업경제학과, 언론홍보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각각 정책과학과의 공공정책학전공, 산업경제학전공, 언론홍보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2000학년도 이전에 통역번역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00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한 학기, 두 학기 또는 세 학기를 이수하고 휴학 또는 제적되었다가 2001학년도 이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각각 30학점, 32학점, 34학점으로 한다.

대학원 학칙

부칙(2001. 9. 24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 3의 디자인대학원에 설치하는 전공 및 학위종별에 관한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직물디자인전공·염색디자인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텍스타일디자인전공에, 광고디자인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정보디자인전공에, 제품디자인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디자인매니지먼트전공에 각각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2. 2. 14 개정)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6. 19 개정)

이 학칙은 2002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2. 7 개정)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0. 10 개정)

이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1. 11 개정)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 20 개정)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2. 10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구 학칙 시행 당시 정보과학대학원 정보과학과 전자상거래학전공에 재적한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전자상거래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2. 정보과학대학원 정보과학과 전자상거래학전공 제적생 중 재입학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학칙에 의하여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전자상거래학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전공변경에 관한 특례) 제2항 제1호 및 동항 제2호에 의하여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전자상거래학 전공에 재적하는 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경영학전공으로의 전공변경을 할 수 있다.

부칙(2004. 8. 30 개정)

이 학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1. 2 개정)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2. 22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정보과학대학원 폐지를 위한 경과조치) 1. 정보과학대학원은 200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재적생이 모두 졸업하는 시점에서 이를 폐지한다.
2. 이 학칙 시행 당시 정보과학대학원에 재적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과·전공 및 학위종별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대학원명	석사학위과정	
	학과 또는 전공	학위종별
정보과학대학원	정보과학과	
	1. 멀티미디어학전공	정보과학석사(멀티미디어학)
	2. 정보보호학전공	정보과학석사(정보보호학)
	3. 인터넷기술전공	정보과학석사(인터넷기술)
	4. 비서정보학전공	정보과학석사(비서정보학)
	5. 기록관리학전공	정보과학석사(기록관리학)

3. 구 학칙 시행 당시 정보과학대학원 정보과학과 기록관리학전공에 재적한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정책과학대학원 정책과학과 기록관리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2004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정보과학대학원 정보과학과 기록관리학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은 정책과학대학원 정책과학과 기록관리학전공의 교과과정에 의하여 이수를 요하는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정보과학대학원 정보과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제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정책과학대학원 정책과학과 기록관리학전공으로 재입학신청을 할 수 있다.

부칙(2005. 2. 11 개정)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1. 18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구 학칙 시행 당시 과학기술대학원 컴퓨터학과, 정보통신학과, 건축학과, 환경학과에 재적한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일반대학원 컴퓨터학과, 정보통신학과, 건축학과, 환경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6. 1. 19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과 및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구 학칙 시행 당시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비서학과,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과일반사회교육전공,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텍스트타일디자인전공·사진전공·환경디자인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각각 이 학칙에 의하여 대

대학원 학칙

학원 언론홍보영상학과, 대학원 국제사무학과,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일반사회교육전공, 디자인 대학원 디자인학과 섬유디자인전공·사진과편집전공·실내디자인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③(사회복지대학원 폐지를 위한 경과조치) 1. 사회복지대학원은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재적생이 모두 졸업하는 시점에서 이를 폐지한다.
2. 이 학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과·전공 및 학위종별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대학원명	석사학위과정	
	학과 또는 전공	학위종별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

부칙(2006. 7. 11 개정)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중 사회복지대학원 폐지는 2006년 3월 1일부터, 동조 중 정보과학대학원 폐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영대학원 폐지를 위한 경과조치) 1. 경영대학원은 2006학년도 제2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재적생이 모두 졸업하는 시점에서 이를 폐지한다.
2. 이 학칙 시행 당시 경영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과·전공 및 학위종별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대학원명	석사학위과정	
	학과 또는 전공	학위종별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1. 경영학전공	경영학석사(경영학) 경영학석사(재무분석) 경영학석사(인사관리) 경영학석사(전략기획) 경영학석사(e-business)
	2. 전자상거래학전공	정보과학석사(전자상거래학)

부칙(2006. 7. 24 개정)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2. 11 개정)

이 학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2. 7 개정)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2006년 7월 24일 개정된 [별표 1]과 관련하여 구 학칙 시행 당시 대학원 약학과, 분자생명과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대학원 생명·약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구 학칙 시행 당시 대학원 생명과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생명·약학부 또는 예코과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7. 5. 16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6년 7월 24일 개정된 [별표 1]과 관련하여 구 학칙 시행 당시 대학원 컴퓨터학과, 정보통신학과, 환경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각각 이 학칙에 의하여 대학원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전자정보통신공학과, 환경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7. 8. 7 개정)

이 학칙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2. 29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 [별표 4]는 구 학칙 시행 당시 경영전문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칙(2008. 4. 7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구 학칙 시행 당시 대학원 화학과 및 나노과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대학원 화학·나노과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8. 5. 28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19 개정)

이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1항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제26조 제1항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0. 21 개정)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및 제32조 제2항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2. 8 개정)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2. 23 개정)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학원 학칙

부칙(2009. 5. 26 개정)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6. 16 개정)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1. 27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3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구 학칙 시행 당시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제중국어교육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TeCSOL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9. 12. 23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구 학칙 시행 당시 실용음악대학원 실용음악학과 음악공학전공 및 피아노교수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각각 이 학칙에 의하여 공연예술대학원 공연예술학과 음악공학전공 및 피아노교수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9년 11월 27일 개정된 [별표 3]과 관련하여 구 학칙 시행 당시 TESOL대학원 TESOL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TESOL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0. 3. 16 개정)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6. 7 개정)

이 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0. 11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별표1], [별표2] 및 [별표3]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구 학칙 시행 당시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영상미디어디자인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UX(User Experience)디자인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0. 12. 6 개정)

이 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3. 21 개정)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9. 14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29조제1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2. 29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구 학칙 시행 당시 사회생활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사회과교육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2. 5. 17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7. 4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29조제1항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 31 개정)

이 학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2. 25 개정)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4. 8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29조제1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정보과학대학원에 대하여 제32조의2제1항 단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5. 15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13년 2월 28일 당시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13년 3월 1일부터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3. 8. 20.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학원 학칙

부칙(2013. 11. 20. 개정)

-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1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2조제2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제29조제4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사회복지전문대학원 폐지를 위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은 2013학년도 제1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재적생이 모두 졸업하는 시점에서 이를 폐지한다.
- ③(경과조치) 구 학칙 시행 당시 TeCSOL학과, 한국어교육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각각 이 학칙에 의하여 국제중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4. 1. 29.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29조제1항의 별표 1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건축학과 박사학위과정 학위종별은 2014년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 5. 15.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29조제1항 별표 1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제28조는 2012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 9. 26. 개정)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 별표 1 중 에코크리에이티브협동과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제36조 및 제37조제3항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독일어교육전공은 2015학년도 제1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재적생이 모두 졸업하는 시점에서 이를 폐지한다.
2. 구 학칙 시행 당시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의상디자인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5. 2. 6.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과 제32조제2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3. 5. 개정)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21.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는 201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9. 18.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26.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29조제1항의 별표 1, 별표 2, 별표 3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16. 개정)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29조제1항의 별표 1, 별표 3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제21조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구 학칙 시행 당시 임상보건과학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임상보건융합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6. 2. 26. 개정)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2015학년도 이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에게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2016. 10. 10. 개정)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별표 1 중 사회적경제협동과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의학전문대학원 폐지를 위한 경과조치) 1. 의학전문대학원은 2017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재적생이 모두 졸업하는 시점에서 이를 폐지한다.
2. 구 학칙 시행 당시 의학전문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과·전공 및 학위종별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대학원명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학과	학위종별	학과	학위종별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의무석사	의학과	의무석사/의학박사

- ③ (학과 및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구 학칙 시행 당시 대학원 전자공학과 및 건축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각각 전자전기공학과, 건축도시시스템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구 학칙 시행 당시 대학원 대기과학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1회에 한하여 학생 희망에 따라 대학원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로 소속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대학원 대기과학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학위종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대학원명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학과	학위종별	학과	학위종별
대학원	대기과학공학과	공학석사	대기과학공학과	공학박사

3. 구 학칙 시행 당시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컴퓨터교육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학위종별

대학원 학칙

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 과 또는 전 공	학위종별
교육대학원	교육 학 과 컴퓨터 교육 전공	교육학석사(컴퓨터교육)

4. 구 학칙 시행 당시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섬유디자인전공 및 도자디자인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학위종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 과 또는 전 공	학위종별
디자인대학원	디 자 인 학 과 섬유 디자인 전공 도자 디자인 전공	디자인석사(섬유디자인) 디자인석사(도자디자인)

부칙(2017. 2. 8.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 별표 2와 관련하여 경영전문대학원 학위종별은 2015학년도 제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 5. 4. 개정)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구 학칙 시행 당시 응용피부과학협동과정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피부응용과학협동과정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7. 8. 16.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5항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9. 15. 개정)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15.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5. 8.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9. 14. 개정)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2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학과 및 전공, 학위종별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구 학칙 시행 당시 정책과학대학원 정책과학과 문화예술행정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문화예술정책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구 학칙 시행 당시 임상보건융합대학원 보건과학과 보건정책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보건정책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8. 12. 19.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구 학칙 시행 당시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의료경영MBA 과정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학위종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학생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바이오&헬스 MBA로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과 또는 전공	학위종별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의료경영MBA)

2. 구 학칙 시행 당시 임상보건융합대학원 보건과학과 보건정책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학위종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과 또는 전공	학위종별
임상보건융합대학원	보건과학과 보건정책학전공	보건학석사(보건정책학)

부칙(2019. 1. 10.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위종별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1. 구 학칙 시행 당시 정책과학대학원 정책과학과 공공정책학전공 정치리더십 세부분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에게는 정치학석사(공공정책학) 학위를 수여한다.

2. 구 학칙 시행 당시 정책과학대학원 정책과학과 공공정책학전공 금융경제 세부분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학위종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과 또는 전공	학위종별
정책과학대학원	정책과학과 공공정책학전공	경제학석사(공공정책학)

부칙(2019. 5. 17. 개정)

이 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9. 11.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4조제1항(별표는 제외한다.), 제12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4항, 제6항 내지 제9항 및 제32조제2항

대학원 학칙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은 제외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제21조제3항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제19조제3항, 제29조제5항 및 제32조제2항 중 교육대학원에 관한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구 학칙 시행 당시 국제사무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20학년도 1학기 졸업생부터 이 학칙에 의하여 변경된 학위종별을 적용한다.

2. 구 학칙 시행 당시 교육대학원을 수료한 학생에게 제29조제5항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였으나 논문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 구 학칙 시행 당시 정책과학대학원 정책과학과 언론홍보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학위종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과 또는 전공	학위종별
정책과학 대학원	정책과학과 언론홍보학전공	언론학석사(언론홍보학)

4. 구 학칙 시행 당시 임상보건융합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학위종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과 또는 전공	학위종별
임상보건 융합대학원	임상보건학과	약학석사(임상약학) 영양학석사(임상영양학) 간호학석사(임상간호학)
	임상약학전공	
	임상영양학전공	
	임상간호학전공	
	보건과학과 국제보건정책학전공	보건학석사(국제보건정책학)

5. 구 학칙 시행 당시 임상치의학대학원 임상구강보건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임상구강보건학과 치위생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20. 1. 21.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9항은 2020학년도 제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는 2020학년도 제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 2019학년도 이전에 일반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제도에 관한 제29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학칙을 적용한다.

2. 구 학칙 시행 당시 교육대학원에 재적하거나 수료한 학생에 대해서도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제도에 관한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20. 3. 20.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은 2020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4. 13.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5. 6.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구 학칙 시행 당시 대학원 컴퓨터공학과와 사이버보안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20. 6. 4. 개정)

이 학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8. 19.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 별표 2 중 국제대학원에 관한 사항은 2020학년도 제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통역번역대학원에 관한 사항은 2021학년도 제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 9. 11. 개정)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1. 10. 개정)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은 제외)는 2021학년도 제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3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2조 개정 학칙의 시행일 전에 재적하고 있거나 수료한 학생 중 개정 학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학연한이 단축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32조의 개정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2021. 3. 3. 개정)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8. 20.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9. 15.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학원 학칙

부칙(2021. 9. 17.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구 학칙 시행 당시 대학원 화학신소재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화공신소재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구 학칙 시행 당시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임상헬스케어학과 임상간호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학위종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과 또는 전공	학위종별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임상헬스케어학과 임상간호학전공	간호학석사(임상간호학)

부칙(2022. 1. 20.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구 학칙 시행 당시 수학교육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22학년도 제1학기 학위수여자부터 이 학칙에 의하여 변경된 학위종별을 적용한다.

2. 구 학칙 시행 당시 임상보건융합대학원에 재적하거나 수료한 학생에 대해서도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 관한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1] <개정 2015.3.5., 2015.10.26., 2016.2.16., 2016.10.10., 2017.5.4., 2018.5.8., 2018.9.14., 2019.5.17., 2019.9.11., 2020.1.21., 2020.5.6., 2020.11.10., 2021.9.17., 2022.1.20.>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학부·학과,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2022학년도)
(제3조, 제4조 및 제29조 관련)

계 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학 과	학위 종별	입학 정원	학 과	학위 종별	입학 정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중국어문학과	문학석사		중국어문학과	문학박사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영어영문학과	문학박사	
	불어불문학과	문학석사		불어불문학과	문학박사	
	독어독문학과	문학석사		독어독문학과	문학박사	
	기독교학과	문학석사		기독교학과	문학박사	
	철학과	문학석사		철학과	문학박사	
	미술사학과	문학석사		미술사학과	문학박사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석사		정치외교학과	정치학박사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행정학과	행정학박사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경제학과	경제학박사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석사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박사	
	사회학과	사회학석사		사회학과	사회학박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심리학과	심리학석사		심리학과	심리학박사	
	소비자학과	문학석사		소비자학과	문학박사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커뮤니케이션학석사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커뮤니케이션학박사	
	여성학과	문학석사		여성학과	문학박사	
	아동학과	아동학석사		아동학과	아동학박사	
	북한학과	북한학석사		북한학과	북한학박사	
	교육학과	문학석사		교육학과	문학박사	
	유아교육학과	문학석사		유아교육학과	문/교육학박사	
	초등교육학과	문학석사		초등교육학과	문학박사	
	교육공학과	문학석사		교육공학과	교육공학박사	
	특수교육학과	문학석사		특수교육학과	특수교육학박사	
	영어교육학과	문학석사		영어교육학과	문학박사	
	사회과교육학과	문학석사		사회과교육학과	문학박사	
	국어교육학과	교육학석사		국어교육학과	교육학박사	
	언어병리학과	언어병리학석사		언어병리학과	언어병리학박사	
	법학과	법학석사		법학과	법학박사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융합콘텐츠학과	다학제융합학석사		융합콘텐츠학과	문/공/미디어디자인학박사	
	국제사무학과	문학석사		국제사무학과	문학박사	
	음악치료학과	음악치료학석사		음악치료학과	음악치료학박사	
자연과학계열	수학과	이학석사		수학과	이학박사	
	통계학과	이학석사		통계학과	이학박사	
	물리학과	이학석사		물리학과	이학박사	
	화학·나노과학과	이학석사		화학·나노과학과	이학박사	
	생명과학과	이학석사		생명과학과	이학박사	
	생명·약학부	이/약학석사		생명·약학부	이/약학박사	
	약학과	약학석사		약학과	약학박사	
	제약산업학과	약학석사		제약산업학과	약학박사	
	과학교육학과	과학교육학석사		과학교육학과	과학교육학박사	
	수학교육학과	수학교육학석사		수학교육학과	수학교육학박사	
	융합보건학과	보건학석사		융합보건학과	보건학박사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석사		식품영양학과	이학박사	
	에코과학부	이학석사		에코과학부	이학박사	
	의과학과	의/이/보건학석사		의과학과	의/이/보건학박사	
	바이오융합학과*	이/약학석사		바이오융합학과*	이/약학박사	
	뇌·인지과학과	이학석사		뇌·인지과학과	이학박사	

* WCU사업과 관련하여 별도로 배정받은 정원을 포함함(바이오융합과학과 석사 30명, 박사 10명).
※ 실기석사 : 음악석사·조형예술석사·무용석사/실기박사 : 음악박사·조형예술박사·무용박사

[별표2] <개정 2015.10.26., 2016.10.10., 2017.2.8., 2018.5.8., 2018.9.14., 2018.12.19., 2019.9.11., 2020.1.21., 2020.3.20., 2020.4.13., 2020.8.19., 2020.9.11., 2020.11.10., 2021.9.17.>

각 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학과, 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2022학년도)
(제3조, 제4조 및 제29조 관련)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학과 또는 전공	학위종별	입학 정원	학과 또는 전공	학위종별	입학 정원
국제 대학원	국제학과 1. 국제통상전공 2. 국제경영전공 3. 개발협력전공 4. 국제관계전공	국제학석사(국제통상) 국제학석사(국제경영) 국제학석사(개발협력) 국제학석사(국제관계)	64	국제학과 1. 국제통상전공 2. 국제경영전공 3. 개발협력전공 4. 국제관계전공	국제학박사	25
	한국학과 1. 한국문화전공 2. 한국어교육전공	한국학석사(한국문화) 한국학석사(한국어교육)		한국학과 1. 한국문화전공 2. 한국어교육전공	한국학박사	
통역번역 대학원	통역번역학과 1. 한영통역전공 2. 한불통역전공 3. 한독통역전공 4. 한중통역전공 5. 한일통역전공 6. 한영불통역전공 7. 한영독통역전공 8. 한영중통역전공 9. 한영번역전공 10. 한불번역전공 11. 한독번역전공 12. 한중번역전공 13. 한일번역전공	통역학석사(한영통역) 통역학석사(한불통역) 통역학석사(한독통역) 통역학석사(한중통역) 통역학석사(한일통역) 통역학석사(한영불통역) 통역학석사(한영독통역) 통역학석사(한영중통역) 번역학석사(한영번역) 번역학석사(한불번역) 번역학석사(한독번역) 번역학석사(한중번역) 번역학석사(한일번역)	118	통역번역학과 1. 통역학전공 2. 번역학전공 3. 통역번역학전공	통역학박사 번역학박사 통역번역학박사	7
경영 전문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경 영 학) 경영학석사(재 무) 경영학석사(회 계) 경영학석사(마 케 팅) 경영학석사(경영정보시스템) 경영학석사(인사조직전략) 경영학석사(경영과학) 경영학석사(금융MBA) 경영학석사(회계전문MBA) 경영학석사(바이오&헬스MBA) 경영학석사(빅데이터MBA) 경영학석사(테크노MBA) 경영학석사(아트&럭셔리MBA) 경영학석사(Executive MBA)	125	경영학과	경영학전문박사	15
법학 전문 대학원	법학과 1. 기업법무전공 2. 공공정책법무전공 3. 국제법무전공 4. 공익법무전공 5. 시민생활법무전공 6. Gender법전공 7. 생명의료법전공 8. 자기설계전공	법학전문석사(기업법무) 법학전문석사(공공정책법무) 법학전문석사(국제법무) 법학전문석사(공익법무) 법학전문석사(시민생활법무) 법학전문석사(Gender법) 법학전문석사(생명의료법) 법학전문석사(자기설계법무)	100	법학과	법학전문박사	9
계	4 대학원 5 학과		407	4 대학원 5 학과		56

대학원 학칙

[별표3] <개정 2015.10.26., 2016.2.16., 2016.10.10., 2017.9.15., 2018.9.14., 2018.12.19., 2019.1.10., 2019.9.11., 2020.1.21., 2020.5.6., 2021.9.17.>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학과·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2022학년도)
(제3조, 제4조 및 제29조 관련)

대 학 원	석사학위과정		
	학과 또는 전공	학위종별	입학정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야간제, 계절제) 1. 국어교육전공 2. 수학교육전공 3. 역사교육전공 4. 지리교육전공 5. 일반사회교육전공 6. 물리교육전공 7. 화학교육전공 8. 생물교육전공 9. 지구과학교육전공 10. 음악교육전공 11. 미술교육전공 12. 체육교육전공 13. 가정과교육전공 14. 도덕·윤리교육전공 15. 영어교육전공 16. 중국어교육전공 17. 소프트웨어교육전공 18. 유아교육전공 19. 초등교육전공 20. 특수교육전공 21. 교육행정전공 22. 교육과정전공 23. 상담심리전공 24. 교육공학·HRD전공 25.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26. 음악치료교육전공 27. 미술치료교육전공 28. 간호교육전공 29. AI융합교육전공	교 육 학 석 사 (국 어 교 육) 교 육 학 석 사 (수 학 교 육) 교 육 학 석 사 (역 사 교 육) 교 육 학 석 사 (지 리 교 육) 교 육 학 석 사 (일 반 사 회 교 육) 교 육 학 석 사 (물 리 교 육) 교 육 학 석 사 (화 학 교 육) 교 육 학 석 사 (생 물 교 육) 교 육 학 석 사 (지 구 과 학 교 육) 교 육 학 석 사 (음 악 교 육) 교 육 학 석 사 (미 술 교 육) 교 육 학 석 사 (체 육 교 육) 교 육 학 석 사 (가 정 과 교 육) 교 육 학 석 사 (도 덕 · 윤 리 교 육) 교 육 학 석 사 (영 어 교 육) 교 육 학 석 사 (중 국 어 교 육) 교 육 학 석 사 (소 프 트 웨 어 교 육) 교 육 학 석 사 (유 아 교 육) 교 육 학 석 사 (초 등 교 육) 교 육 학 석 사 (특 수 교 육) 교 육 학 석 사 (교 육 행 정) 교 육 학 석 사 (교 육 과 정) 교 육 학 석 사 (상 담 심 리) 교 육 학 석 사 (교 육 공 학 · HRD) 교 육 학 석 사 (한 국 어 교 육) 교 육 학 석 사 (음 악 치 료 교 육) 교 육 학 석 사 (미 술 치 료 교 육) 교 육 학 석 사 (간 호 교 육) 교 육 학 석 사 (AI 융 합 교 육)	396
	디자인학과 1. 패션디자인전공 2. 광고·브랜드디자인전공 3. 공간·조명디자인전공 4. UX(User Experience)디자인전공 5. 디자인매니지먼트전공 6. 서비스디자인전공 7. 크래프트디자인전공 8. 컬러디자인테크놀로지전공 9. 공예매개MD전공	디 자 인 학 석 사 (패 셴 디 자 인) 디 자 인 학 석 사 (광 고 · 브 랜 드 디 자 인) 디 자 인 학 석 사 (공 간 · 조 명 디 자 인) 디 자 인 학 석 사 (U X (User Experience) 디 자 인) 디 자 인 학 석 사 (디 자 인 매 니 지 먼 트) 디 자 인 학 석 사 (서 비 스 디 자 인) 디 자 인 학 석 사 (크 래 프 트 디 자 인) 디 자 인 학 석 사 (컬 러 디 자 인 테 크 노 러 지) 디 자 인 학 석 사 (공 예 매 개 MD)	105

(계속)

대 학 원	석사학위과정		
	학과 또는 전공	학위종별	입학정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학)	50
신학대학원	신학과	신학석사(신학)	30
정책과학대학원	정책과학과 1. 공공정책학전공 2.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전공 3. 기록관리학전공 4. 문화예술정책학전공	정치학석사(공공정책학) 정책학석사(공공정책학) 커뮤니케이션학석사(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 기록관리학석사(기록관리학) 문화예술정책학석사(문화예술정책학)	60
공연예술대학원	공연예술학과 1. 영상음악전공 2. 피아노 교수학전공 3. 공연예술경영전공 4. 무용공연지도전공 5. 뮤지컬·연극창작전공 6. 첨단공연영상전공	음악학석사(영상음악) 음악학석사(피아노교수학) 공연예술학석사(공연예술경영) 무용예술석사(무용공연지도) 공연예술학석사(뮤지컬·연극창작) 공연예술학석사(첨단공연영상)	75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임상헬스케어학과 1. 임상약학전공 2. 임상영양학전공 3. 바이오융합규제과학전공 보건학과 1. 보건정책및관리전공 2. 융합바이오헬스전공	약 학 석 사(임상약학) 영양학석사(임상영양학) 이 학 석 사(바이오융합규제과학) 보건학석사(보건정책및관리) 보건학석사(융합바이오헬스)	64
임상치의학대학원	임상치의학과 1. 임플란트치의학전공 2. 임상교정치의학전공 3. 임상치주보철학전공 4. 임상소아치과학전공 5. 근관치료수복학전공 6. 통합치과학전공 임상구강보건학과 1. 치위생학전공 2. 치기공학전공	치의학석사(임플란트치의학) 치의학석사(임상교정치의학) 치의학석사(임상치주보철학) 치의학석사(임상소아치과학) 치의학석사(근관치료수복학) 치의학석사(통합치과학) 구강보건학석사(치위생학) 구강보건학석사(치기공학)	25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TESOL학과 국제중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학과 국제일본어교육학과	TESOL석사(TESOL) 국제중국어교육학석사(TeCSOL) 한국어교육학석사(TKSOL) 국제일본어교육학석사(TJSOL)	80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석사(데이터사이언스학)	40
계	10 대학원		925

대학원 학칙

[별표4] <신설 2008.2.29., 개정 2020.9.11., 2021.9.15.>

경영전문대학원 취득학점(제22조 관련)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주간 과정		야간 과정		주말 과정			
등록 학기	학기당 최대 취득학점	등록 학기	학기당 최대 취득학점	등록 학기	학기당 최대 취득학점	등록 학기	학기당 최대 취득학점
1	21	1	13.5	1	21	1	9
2	18	2	12	2	6	2	9
3	18	3	12	3	15	3	9
		4	13.5	4	6	4	9
						5	12
						6	12

[별표5] <개정 2009.5.26.>

의학전문대학원 취득학점(제22조 관련)

등록 학기	학기당 최대 취득학점
1	36
2	36
3	33
4	33
5	30
6	30
7	25
8	25